

2009년도 노동부 주요업무계획 (주요내용 요약)

◇ 총 5조 4,484억원을 투입하는 적극적 고용안정대책 시행

• 재직근로자 고용 안정

- 고용유지지원금을 인상하여 기업의 일자리 안정 조치 지원

• 실직자 지원 강화

- 1/4분기까지 취업 및 생계곤란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연장 실업급여의 임금·재산 요건 완화
-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특별연장 실업급여 지급 (2개월 연장)
- 하반기까지 영세자영업자 실업급여 임의가입 허용 추진
-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장기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 및 생계지원 방안 검토

• 저소득층 지원 강화

-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미취업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패키지 사업」 실시 (「심층 취업상담 → 근로의욕·능력제고 → 집중취업알선」 후 취업 시 수당 100만원 지급)

◇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의 토대가 되도록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개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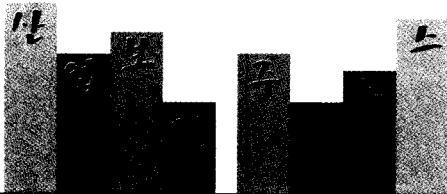
노동부, 사업장에 다양한 화학물질 유해·위험정보 제공

- 최신 MSDS와 편집프로그램 제공, 근로자용 정보지 보급 등 -

노동부는 화학물질 취급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 전달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황 및 문제점

노동부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이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6년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를 도입·시행하였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MSDS의 내용이 전문적이고 이해하기 어렵거나 일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MSDS의 최신 유해·위험성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등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선진외국의 최신 유해·위험성 정보자료를 확보하고 MSDS 작성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한편, 알기 쉬운 근로자용 정보지와 경고표지, 스티커, MSDS 작성지침서 등을 개발하고 민간전문기관을 통하여 배포·비치도록 지원하는 등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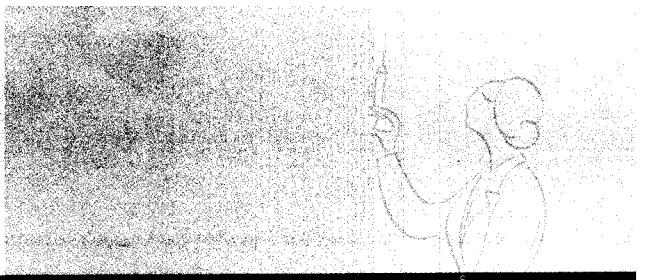
• 주요 대책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MSDS 정보를 쉽게 취득하고 작성 할 수 있도록, 선진외국의 유해·위험성 자료를 파악하여 ‘10년까지 최신 MSDS 1만 6천여 종을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MSDS 작성 지침서”와 페인트 등 혼합 화학물질의 MSDS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내년 초부터 활용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용어로 복잡하게 작성되어 있는 MSDS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근로자용 “한 장짜리 정보지”와 경고표지, 해당 설비에 부착 가능한 위험스티커를 50만부 만들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벤젠 등 직업병을 유발하는 주요 화학물질 30여종에 대하여는 작업공정별로 위험등급을 예측하여 근로자 건강보호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전문교육과정 신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MSDS 작성자에 대한 전국순회교육을 실시하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는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하여 MSDS 작성과 비치,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올바르게 사용·관리하고 있는지를 향후 2년간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MSDS 수거·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에서 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부실 기재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조선업 위험성평가 프로그램 개발·보급

- 중소규모 업체에서도 위험성평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

최근 중소규모 조선업체에서 선박탱크 폭발 및 불록 운반작업 중 협착으로 인하여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조선업체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재해는 생산 공정에 잠재된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발생한 것으로,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하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산업재해이다.

이에, 노동부는 조선업종 산재감소를 위하여 사업장 스스로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는 자율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선업 위험성평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고 지난 달, 19일 밝혔다.

“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공정, 재해형태, 근로자 업무내용 및 재해 기인물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인 및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업장내 사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

노동부는 “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하게 될 중소규모 조선업체 안전관계자를 대상으로 올 1월중에 조선업체 밀집지역인 부산·통영·목포 등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새출발

- 2009.1.1부터 명칭변경 통해 일터근로자 건강보호활동 강화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노민기)이 2009년 1월 1일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기관명칭 변경은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12월 31일 공단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됐다. 이번 공단 명칭 변경은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산업보건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개정하게 된 것이다.

◎ 2009년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산업보건관련 제도

구분	제목	적용시기	대상	비고
1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심사 의무화	2009.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중 전기사용설비 정격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사업장 - 5종의 위험기계 및 방호 장치, 보호구 제조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대상위험설비(5종) : 금속 기타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 작업 관련 설비
2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실시	2009.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교육 : 3개월 이내 이수 - 보수교육 : 신규교육 이수 후 2년 기준 전후 3개월 이내 이수
3	석면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금지	2009. 1. 1	석면 제조·수입·양도·제공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제품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전면 금지
4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특수건강검진제도 시행	2009. 7	10인 미만 사업장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유해위험물질 근로자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